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에 대한 가전업계 애로 건의

진공청소기용 모터의 품질보증기간 확대(1년→3년) 철회

〈본회 전자기기산업팀〉

지난해 우리 가전산업의 수출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우리 가전업계의 부단한 노력으로 2001년에 비해 11% 증가한 1백 8억불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우리 가전업계는 디지털TV, DVD플레이어 등을 비롯한 디지털영상기기 세계 시장의 확대에 힘입어 10%이상의 증가세를 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대내외 경제여건이 극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이라크 전쟁발발 가능성, 북한 핵문제에 따른 한반도 정세불안, 유가 폭등,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및 재정적자 확대, 일본의 경기침체 장기화, 각국의 비관세 장벽 등이 심화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소비심리 및 기업 투자심리 위축, 무역수지 적자로의 반전, 가계대출 비대, 대출금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 확대 등 각종 대내외적인 불안요인이 산재되어 있어 우리 업

계에서는 그 어느때 보다 불안정한 상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을 반영, 지난 2월 27일 신임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님의 취임사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기업경쟁력이므로 기업활동과 밀접한 규제를 개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가전업계는 절대공감하며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생산하여 국민생활 향상은 물론이고 수출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청소기용 모터에 대한 무상수리기간(품질보증기간)을 기존 1년(청소기, 완제품)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증기간의 대폭 확대에도 어느정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에는 현실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청소기용으로 사용되는 모터는 AC/DC 겸용의 유니버설모터로서 사용수명이 340~400시간인 소모성 제품입니다. 또한 동 모터에는 길이가 35mm인 카본브러쉬라는 필수 부품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부품은 30분 사용시 0.05mm씩 소모됩니다.

즉, 하루 30분씩 사용할 경우에는 2년을 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3년으로 적용되고 있는 고가의 전기세탁기용 모터를 청소기용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청소기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성능의 개선과 함께 가격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배 이상(약 20만원 → 40만원) 증가할 것입니다. 즉, 소비자로서는 필요이상의 지출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외 기업의 모터 수명 비교>

(단위 : 대, 천볼, %)

구분	업체명	소비전력 (W)	흡입력 (W)	수명 (시간)
국내	A사	1,650	620	350
	B사	1,640	617	340
해외	산요	1,354	-	393
	사드니	1,280	-	383

지난 1996년 핵심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신규로 도입될 때 겪었던 시행착오를 한가지 소개해 보면, 모니터용 핵심부품인 CDT를 처음에는 단서조항 없이 4년으로만 지정했으나, CDT의 기술적 수명한계가 약 1만 시간이었습니다.

즉 하루 6시간 이하를 사용하는 모니터에는 상관 없지만 그 이상 사용되는 사무·회계용, PC방용, 연구용 등의 경우는 무상으로 제품을 교체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 1999년에 4년과 함께 1만 시간을 단서조항으로 달아 개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즉, 핵심부품의 품질보증기간 지정 시에는 기술적 수명한계와 사용환경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소비자정책도 시장 친화적 제도로 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선진국이나 경쟁국 들처럼 품질보증기간을 기업·제품간 경쟁을 촉발하게 하는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소비자 권익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처럼 정부시책에 의한 획일적인 품질보증기간의 지정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에 신설코자 하는 진공청소기용 모터의 품질보증기간 확대에 대하여 기술적 수명한계와 사용환경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선행될 때까지 철회해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